교원업적 평가규정 시행세칙

[전면개정 : 2023년 2월 28일]

제1조 (목적) 이 세칙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라 평가항목의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는 데 목적이 있다.

제2조 (평가영역) 교원의 업적은 교육 · 연구 · 산학협력 · 봉사영역 총 4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

제3조 (평가 기본원칙) 교원의 업적평가는 교원업적평가규정과 본 시행세칙을 따른다.

제4조 (평가방법) 평가영역별 세부항목 및 배점은 다음 각 호의 평가표에 의한다.(개정 2023.08.31., 2024.08.31.)

1. 교육업적 : 교육업적 종합평가표 (표-<평가1>)
2. 연구업적 : 연구업적 종합평가표 (표-<평가2>)
3. 산학협력업적 : 산학협력업적 종합평가표 (표-<평가3>)
4. 봉사업적 : 봉사업적 종합평가표 (표-<평가4>)

제5조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교원의 업적반영)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교원들에 대해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관리 규정에 명시한 업적점수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6조 (대학 홍보교원의 업적반영) 대학 브랜드 인지도 향상 활동 및 언론매체에 기고(출연)하여 본교를 홍보한 교원에게 대학브랜드위원회 심의를 거쳐 봉사업적을 인정한다.

제7조 (사업전담 교원의 업적 평가) 국책사업, 평생교육, 산업체 임직원 교육 등 교육 및 산학분야의 사업을 전담하는 교원의 업적평가는 해당 사업의 성과와 연계하여 별도의 세부 평가항목 및 기준으로 실시한다.

제8조 (연구재단 학술분류에 따른 분야별 평가) 평가 시 연구재단 학술분류에 따른 아래의 학술분야별로 나누어 평가하되 교원의 제출 업적이 학술분야와 상이할 경우에는 관련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연구업적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를 거쳐 평가할 수 있다.

학술분야1: 공학, 자연과학, 의약학, 농수해양학, 복합학(뇌과학)

학술분야2: 사회과학, 인문학, 복합학(과학기술학, 기술정책, 문헌정보학, 여성학, 인지과학, 감성과학, 학제간 연구)

학술분야3: 예술체육학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2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8월 31일부터 시행한다.

표 -<평가1> (개정 2023.08.31., 2024.08.31.)

교육업적 종합평가표

영 역	평 가 항 목		점수/학기당	
			점수	감점
교육 필수 활동	강의 활동	(1) 강의일수, 강의시수 준수		
		1) 주당 강의일수 준수	20점	-10점
		2) 책임시수 충족	20점/년	-
		(2) 수업관리의 엄정성		
		1) 강의계획서 입력기간 준수	20점	-10점
		2) 출결관리(전자출결시스템)	20점	-10점
		3) 휴/보강관리 준수	-	-10점
		4) 성적입력기간 준수	20점	-10점
		5) 성적 이의신청 기한내 처리	20점	-10점
		(3) 수업반응도 평가(강의평가)		
		1) 전 과목 수업반응도 평가(평균값)	150점	-
		2) 기준점수 미달에 따른 후속조치 참여	-	-20점
		(4) 강의 질 개선 노력		
		1) 강의자가진단 참여	5점	-5점
		2) 강의개선계획서 입력	20점	-10점
		3) Review Board 보고서 제출	30점	-10점
	의무 교육 참여	(5) 법정의무교육		
		1) 폭력예방교육(성희롱 포함)	10점/년	-10점/년
		2) 장애인인식개선교육	10점/년	-10점/년
		3) 개인정보보호교육	10점/년	-10점/년
교육 부가 활동	강의	(1) 강의자료 공개	최대 150점	
		1) 강의자료 최초 공개	100점/과목	
		2) 강의자료 개선	20점/과목	
		(2) ICAN 강좌 운영		
		1) AL/FL/PBL/캡스톤디자인 등 혁신교수법 활용강좌 운영	50점/과목	
		2) 오픈소스강좌 운영	20점/과목	
		3) 융합강좌 운영	20점/과목	
		4) 재능나눔강좌 운영	20점/과목	
		5) 산학연계강좌 운영	20점/과목	
		6) 유연학사강좌 운영	20점/과목(최대60점)	
		(3) 교양강좌 지원	최대 60점	
		1) 대규모 일반교양 과목 운영	30점/과목	
		2) Cross campus 교양강좌 운영	15점/일 (당진의 경우	

				60점/일)
	학생 지도	(1) 비교과면담 1) 호담면담 지도교수 2) 위기학생 지도교수		 1점/명(최대 40점) 3점/명
		(2) 비교과활동 지도	인정기관	최대 100점
		1) 튜터링 지도 2) 학습공동체 지도	교육혁신처 더:함교양대학	10점/건 10점/건
		3) How클리닉 지도	더:함교양대학	0.5점/건
		4) 과제형 캡스톤디자인 지도	공학교육혁신센터 산학협력단 국책사업단 등	20점/건
		5) 학생봉사단 지도 6) 동아리 지도	학생처	10점/건 10점/건
		7) 국가고시교육실 책임지도	교육혁신처	50점/건
		8) 기타 교육관련 활동 지도	교육·봉사업적평가위원회	10점/건
		(3) 학술지도 1) 수상 지도 2) 연구프로젝트 학생참여 논문게재 3) 학생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도		최대 100점 10~20점/건(최대 50점) 10점/건(최대 40점) 5점/건(최대 10점)
		(4) 대학원생 유치 및 지도 1) 대학원생 유치(지도교수 선정시) 2) 석사 배출 3) 박사 배출		 10점/명 10점/명 20점/명
		(5) 유연 학사제도 참여(전공선택제 전담교수 등)		20점/명
	교육질 관리	(1) 교수 실무 역량 촉진 프로그램 참여 (교수법 특강/워크숍/런치세미나, 더:함교양대학 워크샵/세미나 등)		10~30점/건 (최대 60점)
		(2) 수업 개선 활동 촉진 프로그램 참여		10점/건
		(3) 교수법 컨설팅 참여		10~30점/건
		(4) 교수법 연구회 프로그램 참여		10~40점/건
		(5) 전체교수 워크샵 참여		10~50점/학기
	교원 교육	(1) 부정청탁방지교육 (2) 연구윤리교육 (3) 정보보안교육 (4) 아동학대방지교육 (5) 연구실안전관리교육		10점/년 10점/년 5점/년 5점/년 5점/학기
교육성과지표 (학기단위)		(1) 교육단위 성과지표(재학률/입시충원율/취업률)		100점/학기(±80%)

교육업적 종합평가표 설명

1. 교육필수활동

(1) 주당 강의일수, 강의시수 준수

※ 주야간 및 대학원

※ 책임수업시간 별 책임강의일수

- 책임수업시간 0시간일 경우: 0일
- 책임수업시간 1-3시간일 경우: 1일 이상
- 책임수업시간 4-5시간일 경우: 2일 이상
- 책임수업시간 6-8시간일 경우: 3일 이상
- 책임수업시간 9시간일 경우: 4일 이상

※ 주말 강의를 담당하는 교원의 책임강의일수는 별도로 산정할 수 있음

※ 하이브리드 수업만 담당하는 교원의 책임강의일수는 1일씩 감할 수 있음 (신설 2024.08.31.)

(2) 수업관리의 엄정성(미준수시 감점)

1) 강의 계획서 입력 기간 준수

- 강의 계획서 입력 기간 내에 강의 계획서가 모두 입력된 경우에 점수 부여
- 입력 기간 내에 강의 계획서가 미입력된 경우 과목당 -3점 부여 (최대 -10점)

2) 출결관리 엄정성

- 대면으로 진행된 수업시간의 경우는 강의가 진행된 해당 주차 내에 전자출결시스템에 입력이 완료된 경우에 점수 부여
- 온라인 동영상 학습으로 진행된 수업시간의 경우는 학습관리시스템(LMS시스템)에서 온라인출석체크를 설정하여 전자출결시스템에서 출결입력이 된 경우에 점수 부여
- 3주 이상 미입력된 교과목이 있는 경우 과목당 -3점 부여(최대 -10점)

3) 휴/보강관리 충실도

- 휴강을 실시하였을 경우 보강 계획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보강계획서를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보강계획서상의 시간에 보강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건당 -2점 부여(최대 -10점)

4) 성적 입력 기간 준수

- 성적 입력 기간내에 모든 교과목의 성적이 입력된 경우에 점수를 부여
- 입력 기간 내에 모든 교과목의 성적이 입력되지 않은 경우 -10점 부여

5) 성적 이의 신청 기한내 처리

- 성적 이의 신청이 발생하지 않은 교수와 성적 이의 신청 기간내 답변 및 성적처리 완료한 교원에게 점수부여
- 성적 이의 신청 기간 후에 교수의 귀책사유에 의하여 성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점수 -10점 부여

(3) 수업반응도 평가

1) 교수면담튜터링을 제외한 전 과목 수업반응도 평가 결과(평균값)에 따라 학기당 최대 150점으로 환산하여 부여함. 105점 이상은 수업반응도 점수의 1.1을 곱한 점수로 환산하고 환산한 점수가 150점 이상인 경우 150점으로 함

2) 재계약, 재임용, 승진, 정년보장 및 3년 단위 평가 시 평가기간 동안 평균 최대점수(300점)의 75%(225점)를 최소기준으로 함

3) 아래의 경우에 대해 해당 강의의 수업반응도 결과를 포함시키지 않을 수 있다. 단, 점수저조로 인한 취소는 불가함

① <현장실습>과목으로 실제 강의 진행자가 담당교수와 다를 경우

② 명사 특강 등, 담당교수가 아닌 초빙에 의해 이루어질 경우 근거서류 제출에 한하여 인정

③ 강의가 여러 명의 교수로 이루어져, 평가 결과가 담당교수의 결과로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 : 팀티칭과목, 지역학과목, 진로탐색과목, 공개강좌 등

④ 외국어 비전공 학과 또는 더:함교양대학에서 개설한 비원어민교원의 외국어 전용강의(80% 이상 외국어로 진행하는 경우에 한함)

⑤ 대학생활 설계와 비전 1,2

4) 학부수업이 없는 경우 대학원 수업반응도로 대체하며 대학원 수업반응도는 전체 대학원 수업반응도에 대한 보정점수를 활용함

5) 해당학기 수업반응도 평가점수가 없는 경우는 직전 4학기 수업반응도 평균 점수를 부여한다.(연구년, 안식년 교원 제외)

6) 기준점수 미달에 따른 후속조치에 미참여한 경우 최대 -20점 부여

(4) 강의 질 개선 노력

1) 강의자가진단 참여

- 강의자가진단 참여시 점수 부여
- 강의자가진단 미참여시 -5점 부여

2) 강의개선계획서 입력

- 모든 교과목에 대한 강의개선계획서 입력시 점수 부여
- 한과목이라도 강의개선계획서 미입력시 -10점 부여

3) Review board

- 학과교과목을 강의하는 교원의 3분의 2 이상이 참여하여 강의 Review를 실시하여야 하고, 이 Review board에 참여한 자에 한하여 업적 인정
- 더:함교양대학 주최의 Review Board 회의에 참여하여 Review Board를 작성한 경우
  단, 이공계 기초교과목 및 기초역량 교과목은 동일교과목 담당교원들의 3분의 2이상이 참여한 경우에 참여자에 한하여 업적 인정
- 단과대학에 소속되지 않아 Review Board 회의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 강의개선계획서 건당 10점을 부여하되, 최대 점수는 30점을 넘을 수 없다.

(5) 의무교육 참여

교원교육	이수 방법	점수	
		이수시	미이수시
성희롱, 성매매, 성폭력, 가정폭력 교육	-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 수료증 제출 불필요	10점/년	-10점/년
장애인 인식 개선 교육	-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 온라인 교육 이수 시에는 수료증 제출	10점/년	-10점/년
개인정보보호교육	-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 온라인 교육 이수 시에는 수료증 제출	10점/년	-10점/년

2. 교육부가활동

(1) 강의자료 공개

1) 강의자료 최초 공개

- 대학강의 및 강의자료 공동활용서비스(KOCW) 및 한국형 무크(K-MOOC)에 최초 공개
- KOCW 사이트와 K-MOOC사이트에 공개한 강의계획서와 강의동영상 또는 강의자료를 시스템에서 자동 집계하여 대학정보공시 입력시스템으로 연계한 강의
- 원격교육지원센터의 승인을 받은 강의자료에 한함

2) 강의자료 개선

- KOCW, K-MOOC 공개강의자료 개선이란 이미 업로드 하여 연계한 자료 중 원격교육지원센터 교과목 재개발 공모에 선정되어 다시 공개된 자료에 한함

(2) ICAN 강좌 운영

※ 교무처장이 승인한 AL/FL/PBL/캡스톤디자인 등 혁신교수법 활용강좌, 오픈소스강좌, 융합강좌, 재능나눔강좌, 산학연계강좌만 인정(각 국책사업단 및 특성화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AL/FL/PBL/캡스톤디자인 등 혁신교수법 활용강좌, 오픈소스강좌, 융합강좌, 재능나눔강좌, 산학연계강좌의 경우 교무처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인정)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은 일반 교과목형, 기업연계형으로 캡스톤디자인 운영지원을 받은 교과목(대학정보공시에 반영된 교과목)에 한함

※ 동일한 오픈소스강좌, 융합강좌, 재능나눔강좌, 산학연계강좌의 경우, 다수의 반을 운영한다 하더라도 한 건만 인정(단, AL/FL/PBL/캡스톤디자인 등 혁신교수법 활용강좌 복수분반의 경우 2개 분반부터는 50%만 인정)

1) AL(Action Learning)/FL(Flipped Learning)/PBL(Problem Based Learning)/캡스톤디자인(Capstone Design) 등 혁신교수법 활용강좌 운영(학사팀 승인 교과목만 인정)

2) 오픈소스강좌개설

- SW중심대학사업단에서 인정한 교과목

3) 융합강좌

- 2020년 이후 개설된 교과목 중 학사팀에서 승인한 교과목만 인정

4) 재능나눔강좌

- 2020년 이후 개설된 교과목 중 학사팀에서 승인한 교과목만 인정

5) 산학연계강좌

- 기업체와 연계하여 운영되는 교과목으로 학사팀에서 승인한 교과목만 인정

6) 유연학사강좌

- 국내외 공동교육과정, 모듈형교육과정 등 내 교과목 중 학사팀에서 승인한 것만 인정
- 대학원 집중이수제 등 대학원교학팀에서 승인한 것만 인정 (신설 2024.08.31.)

(3) 교양강좌 지원

1) 대규모 일반교양 과목 운영

- 100명 초과 강좌만 인정
- 동일한 교과목으로 복수의 강좌를 진행하는 경우 1강좌만 인정

2) Cross campus 교양강좌 운영

- 교양필수 및 일반교양 인정
- 연구실 기준으로 타 지역 캠퍼스(천안, 아산, 당진)에서 강의할 경우 인정
- Cross Campus에 당진이 포함될 경우 60점/일 인정하고 그 외에 15점/일 인정

(4) 비교과 면담

1) 호담 지도교수

- CanDo 시스템에 면담 내용을 입력한 학생 수를 기준으로 업적점수를 부여함

2) 위기학생 지도교수

- 위기학생 관리를 위해 호담 면담 지도 학생 중 탈락 위기 학생이 있는 경우 학생 면담을 실시하였고 탈락하지 않은 경우 3점/인 부여함

(5) 비교과활동 지도

- 인정 기관의 승인이 있는 경우에 한 함

(6) 학술지도(개인 교수 단위로 평가)

1) 수상 지도

- 국제 수상 20점/건
- 국내 수상 10점/건

※ 업적평가 시 학생지도내용을 업적시스템에 입력해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 명목상 지도교수라 할지라도 실제 지도를 하지 않은 경우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않음

※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지도한 경우에는 인원 가중치(1/n × 100%)를 적용함

※ 수상 지도가 연구업적으로 인정되는 계열의 경우, 연구업적과 교육업적을 중복으로 인정하지 않음

2) 연구프로젝트 학생참여 논문게재

- 연구업적이 인정되는 연구논문에 참여 학생이 저자로 등록되는 경우 인정(대학원생 포함)

3) 학생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도
- 국내·외 학술대회 논문발표 지도
- 발표논문에 참여학생이 저자로 등록되는 경우 인정 (대학원생 포함)

(7) 대학원생 유치 및 지도
1) 대학원생 유치
(대학원 진학생의 공동지도 교수(최대2인)로 지정이 되는 경우 각각 5점/명)
2) 석사 배출(학위 취득)
- 석사학위 공동지도인 경우 교수(최대 2인)별 5점/명
3) 박사 배출(학위 취득)
- 박사학위 공동지도인 경우 교수(최대 2인)별 10점/명

(8) 유연 학사제도 참여(전공선택제 전담교수 등)
- 자율전공제, 학생설계전공제 지도 등

(9) 교수 실무 역량 촉진 프로그램 참여
- 교무처 및 더:함교양대학 주관 교수 실무 역량 촉진 프로그램(교수법 특강/워크숍/런치세미나, 더:함교양대학 워크숍/세미나, 산학연계 연수 등)에 참여한 경우

(10) 수업 개선 활동 촉진 프로그램 참여
- 교무처 주관 수업 개선 활동 촉진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11) 교수법 컨설팅 참여
- 교무처 주관 교수법 컨설팅에 참여한 경우

(12) 교수법 연구회 프로그램 참여
- 교무처 주관 교수법 연구회 프로그램에 참여한 경우

(13) 전체교수 워크샵 참여
- 전체교수 대상 교수법 워크숍 등 교수역량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참여 시 인정

(14)~(18) 교원교육 참여

교원교육	이수 방법	점수
부정청탁 방지 교육	-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 온라인 교육 이수 시에는 수료증 제출	10점/년
연구 윤리 교육	- 오프라인 교육 또는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 온라인 교육 이수 시에는 수료증 제출	10점/년

정보보안교육	-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 온라인 교육 이수 시에는 수료증 제출	5점/년
아동학대방지교육	-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 온라인 교육 이수 시에는 수료증 제출	5점/년
연구실 안전관리 교육	- 오프라인 교육 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수 - 온라인 교육 이수 시에는 수료증 제출	5점/학기

3. 교육성과지표

(1) 교육단위 성과지표(재학률/입시충원율/취업률)

- 1배속(원소속) 학과 교원들의 교육단위 성과지표 점수의 총합은 학과 총점과 같아야 하며, 학과의 개별교원들의 교육단위 성과점수는 학과장 및 학장이 각각 부여하며, 반영 비율은 교무처에서 정한다. 단, 중복 배속으로 교육단위 성과지표에 기여한 경우는 학과 총점 내에서 부여한다.

  ※ 학과총점: 학과 교육성과지표 점수× 1배속(원) 소속 교원수

  ※ 학과 교원들의 교육단위 성과점수는 학과의 교육성과지표 점수±80% 이내에서 결정

  예) 학과 교육성과지표 점수 90점이고, 학과의 교원수가 5명일 경우

  5명의 교육성과지표 점수 총점은 450점이 되어야 하며, 개별 교원의 점수는 18~162점을 부여할 수 있다.

- 1학기 성과지표

교육성과 지표	배점	기준일	평가 방법
입학 충원율	50점	3월 1일	1) 입학충원율 100% 이상인 경우: 50 2) 입학충원율 100% 미만인 경우: 50 -(정원미달률×2.5) MIN(50, 50-(정원미달률×2.5)) ※ 입학충원율: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 0점 처리함
재학률	50점	4월 1일	MAX(0, MIN(25, 25-(100-재학률)×1.25)) + MAX(0, (25-중도탈락률×25)) ※재학률은 재학률과 중도탈락률을 바탕으로 위 식에 의함 ※재학률은 공시지표에 사용되는 재학률로 함 ※중도탈락률 계산시 타학과로의 전과한 학생을 제외함 ※재학률: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 0점 처리함

※ 입학충원율: 학생 모집단위로 소속교수는 동일하게 평가받음.

※ 재학률: 해당학년마다 학생 모집단위별로 점수를 산정함. 학부제와 학과(전공)제 모집단위가 혼재되는 경우 각 학년별 전체 모집정원을 기준으로 재학률을 산정함. 5학년 이상 재학하는 학생은 4학년 재학률 산정에 반영함 (편제단위)

- 2학기 성과지표

교육성과 지표	배점	기준일	평가 방법
취업률	50점	12월 31일	1) 전국 학과별 평균 취업률 대비 학과(학부) 취업률 (최대 50점) - 전국 계열별 평균(C), 학과 취업률(D)인 경우 - D가 C+7% 초과인 경우 : 50 - D가 C~C+7% 인 경우 : 0.5×(100-1×(C+7-D) - D가 C 미만인 경우 : 0.5×(100-2×(C+7-D)) 예1) 전국평균 취업률(C)이 65%인 A학과의 취업률(D)이 73% 인 경우= 50 예2) 전국평균 취업률(C)이 65%인 A학과의 취업률(D)이 70% 인 경우 = 0.5×(100-(72-70)) = 49 예3) 전국평균 취업률(C)는 65%인 A학과의 취업률(D)이 55% 인 경우= 0.5×(100-2×(72-55)) = 33 * 교육혁신처 취업률 데이터를 활용함
재학률	50점	10월 1일	MAX(0, MIN(25, 25-(100-재학률)×1.25)) + MAX(0, (25-중도탈락률×2.5)) ※재학률은 재학률과 중도탈락률을 바탕으로 위 식에 의함 ※재학률은 공시지표에 사용되는 재학률로 함 ※중도탈락률 계산시 타학과로의 전과한 학생을 제외함 ※재학률: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 0점 처리함

※ 비학과 소속 교원의 경우는 "대학의 교육성과 및 기타 학과발전기여에 대한 연간 학교발전기여 계획서[양식10] 및 학기 단위 성과보고서"를 기반으로 한 평가점수와 교육단위 중복배속 교원의 경우는 중복 배속 학과에서 부여받은 교육단위 성과지표 평가점수를 포함하여 평가점수를 부여하되, 학기당 최대점수는 학기별 성과지표의 전체 대학 평균값으로 한다.

표 -<평가2> (개정 2024.08.31.)

연구업적 종합평가표

<table>
<tr><th colspan="3">평 가 항 목</th><th>배 점</th><th colspan="2">비 고</th></tr>
<tr><td rowspan="8">1.학술논문</td><td rowspan="4">(1) 국제저명학술지</td><td>SSCI, A&HCI</td><td>450점/편</td><td rowspan="4">코어</td><td rowspan="4">기본배점에 가점을 더하여 점수 부여</td></tr>
<tr><td>SCIE</td><td>360점/편</td></tr>
<tr><td>가점(SSCI, A&HCI, SCIE)</td><td>최대 400점/편</td></tr>
<tr><td>SCOPUS 학술지</td><td>250점/편</td><td>코어</td><td rowspan="5">승진평가 시, 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점수는 코어에 반영하지 않음
연봉평가, 승진 심사시 250점/학기 상한 적용</td></tr>
<tr><td colspan="2">(2) 국외학술지</td><td>150점/편</td><td>코어</td></tr>
<tr><td colspan="2">(3) 국내저명학술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td><td>200점/편
150점/편</td><td>코어</td></tr>
<tr><td colspan="2">(4) 국내학술지</td><td>80점/편</td><td></td></tr>
<tr><td colspan="2">(5) 기타 학술지(교내 기본연구소 논문집 등)</td><td>50점/편</td><td></td></tr>
<tr><td>2. 학술발표</td><td colspan="2">(1) 국제학술회의 발표</td><td>30점/편</td><td></td><td>연간 최대 60점</td></tr>
<tr><td rowspan="4">3.저 서</td><td colspan="2">(1) 국제전문서적</td><td>최대 500점/권</td><td>코어</td><td rowspan="4">서적의 쪽수에 따라 점수 부여 (연구업적 Code표 참조)</td></tr>
<tr><td colspan="2">(2) 국내전문서적</td><td>최대 300점/권</td><td>코어</td></tr>
<tr><td colspan="2">(3) 번역서</td><td>최대 120점/권
(최대 년 120점)</td><td>코어</td></tr>
<tr><td colspan="2">(4) 편저서 및 교재개발</td><td>50점/권</td><td></td></tr>
<tr><td rowspan="2">4.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인증 보고서</td><td colspan="2">(1)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td><td></td><td>코어</td><td>시행세칙 5조 참조</td></tr>
<tr><td colspan="2">(2) 인증 보고서</td><td>최대 400점</td><td>코어</td><td></td></tr>
</table>

※ 예체능대학의 작품 및 전시에 대한 증빙자료로 해당업적의 디지털이미지 및 영상화일 제출

연구업적 종합평가표 설명

1. 학술논문

※ 저자가 다수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학술논문 공동저자 점수 환산율 규정을 적용함

(1) 국제저명학술지

평가항목	배 점
SSCI, A&HCI	450점/편
SCIE	360점/편
가점(SSCI, A&HCI, SCIE)	최대 400점/편
SCOPUS 학술지	250점/편

1)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 A&HCI(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SCIE(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학술지

- WoS(Web of Science) DB에서 논문이 검색되고, 논문이 게재된 저널이 SSCI, A&HCI, SCIE로 조회되는 경우 점수 부여
- WoS DB에서 검색되는 논문이라도 early access 상태인 논문은 업적으로 미인정(최종 게재년월 확정시 해당하는 학기에 업적점수 부여)

2) SCOPUS 학술지

※ SCOPUS로 검색되는 저널이라 하더라도, 학술연구재단의 SCOPUS 인정기준에 적합한 논문만을 SCOPUS 학술지 점수 부여

※ 학술연구재단에서 SCOPUS 논문으로 인정되는 4가지 문서종류인 [Article, Review, Erratum, Book Chapter]을 SCOPUS 학술지로 인정한다.

※ 최종 점수는 기본배점(SSCI, A&HCI : 450점, SCIE : 360점)과 가점을 더하여 결정한다.

※ SCOPUS 학술지의 경우 가점을 부여받을 수 없다.

※ 가점은 (50-JCR학술지순위비율(%))×8 으로 계산한다. 단, JCR학술지순위비율이 5%이내인 월드클래스 수준 논문의 가점은 (50-JCR학술지순위비율(%))×12 으로 계산한다.

- 가점은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 계산결과가 0이하일 경우, 가점은 0점으로 부여한다.
- JCR 학술지순위비율(%) : Clarivate Analytics 社에서 발행하는 JCR(Journal Citation Report)의 자료 중 해당 학술지(journal)의 분야(category)별 IF(Impact Factor)에 의한 순위(rank) 정보를 활용하되 다음의 수식으로 산출한다. 단, 해당 학술지의 category가 여러 분야에 포함될 경우 순위비율이 가장 작은 category의 순위비율을 적용한다.

$$\text{JCR 학술지순위비율}(\%) = \frac{\text{분야(category)내 해당학술지의 순위(rank)}}{\text{분야(category)내 전체학술지 수}} \times 100$$

- JCR 학술지순위비율 값은 연구행정시스템의 등록시점에 유효한 최신정보를 기준으로 한다.

(2) 국외학술지

※ SCOPUS로 검색되는 저널 중에서 학술연구재단에서 SCOPUS로 불인정되는 7가지 문서형태만을 국외학술지로 정의하고, 그 외의 논문은 국외학술지로 인정하지 않는다.

※ 학술연구재단에서 SCOPUS 논문으로 불인정되는 7가지 문서종류는 [Editorial, Letter, Note, Conference Paper, Article-in Press, Conference Review, Short-survey]이다.

(3) 국내저명학술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지 혹은 등재후보지

- 등재 혹은 등재후보학술지가 되면 등재되기 전에 발표되었으나 업적평가가 실시되지 않은 논문도 국내저명학술지로 인정받을 수 있다.

(4) 국내학술지

- 법인 등록된 학회 및 이에 준하는 학술단체에서 연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발간되고, 심사제도 (심의「peer review」, 비평「critique」)가 확립되어 있으며, 전국적인 회원을 갖는 학술지

(5) 기타 학술지

1) 교내 기본연구소 논문
2) 지방학회, 연구소, 타 대학 학술지, 기타 연구단체의 정기학술지
3) 건축 및 예술관련 연속간행물 또는 webzine에 전공과 관련한 저술 및 비평, 대담
4) 국내 연속간행물에 게재된 학술논문
5) 기념논문집
6) 평론, 시 등 문예창작 작품과 전공과 관련한 저술
7) 해설, 총설, 기고 등의 논문

(6) 한국연구재단 학술논문 공동저자 점수 환산율 규정

저자가 1인인 경우	1
저자가 다수인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 : 2/(n+2)
	공동저자 : 1/(n+2)

※ n은 저자수를 의미하며, 저자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n=15로 처리한다.

※ 주저자는 제1저자(first author) 또는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의미함.

※ 주저자가 불명확한 경우, 해당교원은 증거물(연구논문발표학회 또는 출판사와의 거래 서신 내용 등)의 제출을 요구받을 수 있다.

※ 본교 재학생(투고시점)은 저자 인원 산출시 제외함.

※ 국제저명학술지(Scopus제외)의 주저자 업적인 경우 연구재단 환산율과 50% 중 높은 환산율을 적용함.

※ 공동 교신저자가 다수인 경우 1인만 인정함(신설 2024.08.31.)

2. 학술발표

국제저명학술지를 발간하는 학회에서 주관하는 국제학술회의에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에만 인정한다.

3. 저서 및 번역서 등(150쪽 이상)

※ 저자가 다수일 경우 한국연구재단의 저서출판 공동저자 점수 환산율 규정을 적용함

(1) 국제전문서적

1) "국제전문서적"이라 함은 연구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국외의 권위있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전문학술서적을 말한다.

(2) 국내전문서적

1) "국내전문서적"이라 함은 연구업적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한 국내의 권위있는 출판사에서 출판한 전문학술서적을 말한다.

2)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일반에게 공개된 출판물이어야 함.

3) 국제표준도서번호(ISBN)가 있는 저서를 말하며 동일제목의 저서는 출판권수와 관계없이 하나의 저작물로 간주함.

4) 교과용 도서 규정에 의한 국정・검정・인정 교과용 도서

(3) 번역서

1) 학술적 가치가 인정된 전공분야의 학술서를 국어나 외국어로 번역, 출판한 서적(편역서 포함)을 말함.

(4) 편저서 및 교재개발(설계, 책임감수, 편집 등도 포함)

1) 여러 논문을 묶어 편저자로 출판한 서적

2) 대학의 강의를 위한 편저서

(5) 한국연구재단 저서출판 공동저자 환산율 규정

- 주저자, 교신저자, 공저자 구분없이 1/n을 적용하며, n은 저자수를 의미한다.
- 저자수가 10명 이상인 경우에는 n=10으로 처리한다.
- 주저자로 인정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입증자료를 연구업적평가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4.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인증 보고서

(1)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5조의 기준에 의해 업적점수를 부여함

※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업적은 산학협력 업적 중 사업유치 및 운영보고서 업적, 봉사업적 중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보고서 참여업적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 국책사업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점수는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주저자 업적으로 인정함

(2) 인증보고서(최대 400점/건)

구분	A급	B급	C급	비 고
본부 인정 인증보고서	400점	300점	200점	책임자가 제출하는 명단 및 참여율에 기초한 참여 실적에 의거 점수를 배분함

※ A급 인증 : 5개 학과 이상이 참여하는 국가단위의 인증평가 (예, 공학인증)
B급 인증 : 학과 단위로 참여하는 국가 및 학회 인증평가 (예, 간호학, 건축학, 경영학 등)
C급 인증 : 학과 단위로 참여하는 기관 평가 및 이에 준하는 인증

※ 인증 보고서 업적 실적은 산학협력 업적 중 사업 운영 업적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 참여교수의 점수가 책임자의 점수를 초과할 수 없음

(연구업적 CODE표 - 건축학)

구분 CODE	내 용	배 점	비고
건축개인전 10	국외에서의 건축 개인전	250점/건	코어
건축개인전 20	국내 공공 및 문화단체 개인전	150점/건	
건축개인전 30	국내 작품 전시회 개인전	100점/건	
건축초대전 10	대한민국 건축 대전 초대작가 출품작	150점/건	
건축단체전 10	국외 건축 단체전 출품작	150점/건	코어
건축단체전 20	국내 공공 및 문화단체 단체전	100점/건	
건축단체전 30	국내 전국 규모의 단체전	70점/건	
건축현상전 10	국제전 현상설계 당선작	250점/건	코어 (SSCI, A&HCI, SCIE급 인정)
건축현상전 20	국제전 현상설계 CITATION이상 입선작	150점/건	
건축현상전 30	국제전 현상설계 출품	70점/건	
건축현상전 40	국내전 현상설계 당선작	150점/건	코어
건축현상전 50	국내전 현상설계 장려상 이상 입선작	100점/건	코어
건축현상전 60	국내전 현상설계 지명출품	70점/건	
건축현상전 70	국내전 현상설계 출품	50점/건	
건축작품 10	국외 건축전문지 게재 계획 작품(1작품 1회 한함)	200점/건	코어
건축작품 20	국외 건축전문지 게재 완공 작품(1작품 1회 한함)	250점/건	
건축작품 30	국외 저명한 공공단체나 문화단체로부터 수상한 계획 또는 완공된 작품	200점/건	
건축작품 40	국내 건축전문지 게재 계획 작품(1작품 1회 한함)	100점/건	코어
건축작품 50	국내 건축전문지 게재 완공 작품(1작품 1회 한함)	150점/건	코어
건축작품 60	시 및 도 이상의 공공단체나 전국 규모의 문화단체로부터 수상한 계획 또는 완공된 작품	100점/건	코어
건축작품 70	건축작품집 출간	200점/건	코어

※ 국내·외 저명 학술지 게재 요건을 대체하는 경우

1) 상기 표에서 코어로 표기된 항목 (신설)

2) 교수의 실명으로 현상설계에 참여할 수 없는 경우 건축설계사무소와의 계약서 또는 건축전문지 게재시 실명 기재확인을 통하여 인정함. 출품에 대한 증명은 주최단체가 발행한 참여증명서로 함.

3) 공동작품의 경우는 한국연구재단 학술논문 공동저자 점수 환산율 규정을 적용함.

주작가 = 2/(n+2), 공동작가 = 1/(n+2)

n은 총작가수를 의미하며 총작가수가 15명 이상인 경우 n=15로 처리함

(단, 주작가 불명의 경우 1/n로 처리하며, 총작가수가 15명을 초과하더라도 n=15으로 처리함)

(연구업적 CODE표 - 음악)

구분 CODE	내 용		배 점	비고
음악개인 10	국내의 광역시 및 수도권 이상 개인음악회		150점	코어
음악개인 20	국내의 인정된 기타지역 개인음악회		80점	
음악작곡 10	국내의 광역시 및 수도권 이상 오페라/오케스트라 작품발표 또는 악보 출판 (동일작품 재공연시 새 버전일 경우 기준점수의 1/3 인정)		150점 (50점)	코어
음악작곡 20	국내의 인정된 기타지역 오페라/오케스트라 작품발표		80점	
음악작곡 30	국내의 광역시 및 수도권 이상 오케스트라 비포함 작품발표 또는 악보 출판		100점	코어
음악작곡 40	국내의 인정된 기타지역 오케스트라 비포함 작품발표		50점	
음악작곡 50	국내의 광역시 및 수도권 이상 가곡작품발표 또는 악보 출판		50점 년 3회만	코어
음악작곡 60	국내의 인정된 기타지역 가곡작품발표		25점	
음악성악 10	국내의 광역시 및 수도권 이상 오페라 Part별 주역출연		100점 년 2회만	코어
음악성악 20	국내의 인정된 기타지역 오페라 Part별 주역출연		50점	
음악성악 30	국내의 광역시 및 수도권 이상 오라토리오 Solist 출연		50점	코어
음악성악 40	국내의 인정된 기타지역 오라토리오 Solist 출연		25점	
음악지휘 10	국내의 광역시 및 수도권 이상 오페라 지휘		150점 년 2회만	코어
음악지휘 20	국내의 인정된 기타지역 오페라 지휘		80점	
음악지휘 30	국내의 광역시 및 수도권 이상 오케스트라/합창 지휘		100점 년 5회만	코어
음악지휘 40	국내의 인정된 기타지역 오케스트라/합창 지휘		50점	
음악지휘 50	갈라콘서트 지휘		50점	
음악이론 10	국내외 기관지 및 그 인터넷 매체에 게재된 음악작품해설		30점	
음악이론 20	작품해설 또는 평론 A4 20매 이상 (인터넷 매체 포함)		20점	
음악이론 30	작품해설 또는 평론 A4 19매 이하 (인터넷 매체 포함)		10점	
음악제작 10	Studio녹음의 음반출판	1인	150점	코어
음악제작 20		2인	80점	
음악제작 30		3인	60점	
음악공동 10	공동음악회 (코어 : 국내의 광역시 및 수도권 이상 공인된 오케스트라 협연)	협연(전곡), 50% 이상 출연	80점	코어
음악공동 20		협연(부분), 33~49% 출연	40점	
음악공동 30		협연(부분), 33%미만 출연	30점	

(1) G20에 준하는 지역에서의 국제적 공연, 출판 (악보, CD, DVD) 공연 업적물에 대해서 업적점수를 150% 인정하며, 국제적 공연의 경우 SSCI, A&HCI, SCIE급 업적으로 인정함

(2) 재연의 경우는 1차 재연만 인정함, 1차 재연 시 기준점수의 50%임. 재연에 대한 인정은 연구업적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3) 코어에 해당하는 항목

1. 국내 광역시 및 수도권 이상 공연장에 천안 봉서홀 및 천안예술의전당을 포함함.
2. 지휘나 협연(오페라, 오라토리오 포함)의 경우, 시립교향악단(합창단)에 준하는 연주단체 이어야 함.
3. CD제작(인터넷 매체 포함) 및 악보출판은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정도의 가치가 인정되는 것에 한함.
4. 모든 업적물의 방송 또는 인터넷매체 제작물도 같은 배점으로 적용한다. (지상파, 종편, 음악전문 케이블 TV 및 클래식전문 유튜브방송 등의 인터넷 매체)

※ 상기 코어 업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순수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음.

(연구업적 CODE표 - 실용음악(구, 디지털음악 및 기독교연예))

구분 CODE	내 용		배 점	비 고
디지털음악제작 10	국내의 광역시, 수도권 이상 장편 문화콘텐츠 음악제작 작품발표		200점	코어
디지털음악제작 20	국내의 광역시, 수도권 이상 단편 문화콘텐츠 음악제작 작품발표		150점 (년 3회만)	코어
디지털음악제작 30	국내의 인정된 기타지역 장편 문화콘텐츠 음악제작 작품발표		150점	코어
디지털음악제작 40	국내의 인정된 기타지역 단편 문화콘텐츠 음악제작 작품발표		90점	코어
디지털음향제작 10	음악앨범 엔지니어링, 문화콘텐츠 관련 프로그래밍 또는 사운드디자인		150점	코어
디지털음향제작 20	디지털싱글(온라인음원), 광고, 게임, 단편 영상음악 음향의 제작		30점	코어
디지털공연음향 10	국내의 광역시 및 수도권 이상 공연음향디자인		40점	코어
디지털공연음향 20	국내의 인정된 기타지역 공연음향디자인		20점	
공간음향디자인 10	국내의 광역시 및 수도권 이상 공간음향디자인		80점	코어
공간음향디자인 20	국내 인정된 기타지역 공간음향디자인		40점	
디지털음악비즈니스 10	음악앨범, 뮤지컬 오페라 등 문화콘텐츠의 기획 연출(프로듀싱), 제작, 음악(예술)감독, 지휘 중 하나		150점	코어
디지털음악비즈니스 20	디지털싱글 (온라인음원)의 기획, 연출(프로듀싱), 제작 중 하나		30점	코어
기독교연예 10	국내 및 해외 전문 공연장/ solo 또는 2인 이상 밴드 단독공연		200점	코어
기독교연예 20	국내 인정된 음악페스티발, 전문 공연장 공동 공연 (1스테이지 3곡이상) / solo 또는 2인 이상 밴드 공연		150점 (년 2회만)	코어
기독교연예 30	방송 매체 출연	공중파(SBS, KBS, MBC, EBS) 음악프로그램/solo 또는 2인 이상 밴드 단독공연	200점	코어
		공중파(SBS, KBS, MBC, EBS) 음악프로그램/solo 또는 2인 이상 밴드 공동공연 (1스테이지 3곡이상)	100점	코어
		기타 방송(라디오 및 종편-JTBC, 채널A, MBN, TV조선 등) 음악프로그램 / solo 또는 2인 이상 밴드 단독공연	100점	
		기타 방송(라디오 및 종편-JTBC, 채널A, MBN, TV조선 등) 음악프로그램 / solo 또는 2인 이상 밴드 공동공연 (1스테이지 3곡이상)	50점	
기독교연예 40	40분 이상 정규앨범/solo 또는 2인 이상 밴드앨범 출반		200점	코어
	싱글앨범/디지털 싱글(온라인음원)	1. 3곡이상	120점	
		2. 3곡미만	80점	
	외부가수(2인 이상 그룹포함)의 의뢰 작품(작곡, 작사, 연주, 반주)으로서 음반제작 참여(유명음반사 출	5작품 이상 참여	120점	
		3작품 이상 참여	80점	

	판 기준)	2작품 참여	50점	
		1작품 참여	30점	
	창작 작품 악보집 출판/ 12곡 이상 혹은 30페이지 이상		200점	
	창작 작품 악보집 출판/ 8-12곡 혹은 20페이지 이상		150점	
	창작 작품 악보집 출판/ 4-8곡 혹은 10페이지 이상		100점	
기독교연예 50	음악평론(인터넷 매체 포함, 매수제한 없음)		20점	
기독교연예 60	장편 문화콘텐츠 미디어 (CD 혹은 DVD,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출판		200점	코어
	단편 문화콘텐츠 미디어 (CD 혹은 DVD, 온라인 디지털 콘텐츠) 출판		150점	
기독교연예 70	국제 저명 경연 콩쿨 혹은 음악제 주요부분 본상 수상 선정		100점	코어 (SSCI, A&HCI, SCIE급 인정)
	국내 저명 경연 콩쿨 혹은 음악제 주요부분 본상 수상 선정		50점	
기독교연예 80	국제 정상급 음악제 초청/위촉 작품 발표		100점	
	국내 정상급 음악제 초청/위촉 작품 발표		50점	

(1) 상기 코어업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순수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음.

(2) 재연의 경우는 1차 재연만 인정함, 1차 재연 시 기준점수의 50%임. 재연에 대한 인정은 연구업적 평가위원회에서 판단함.

(3) 문화컨텐츠 음악 및 음향 제작관련 장편과 단편의 판단기준은 매체의 특성에 따라 별도 심사함.

(4) 디지털음향제작 1, 2는 판매용 음반(온라인 음원 포함)에 한하며, 한 개의 음악앨범에서 레코딩, 믹싱, 마스터링 중 한 개 분야에 대하여 인정(복수인정 불가)함.(한 분야에서 참여인원에 따라 1/n의 점수를 부여함.)

(5) 디지털음악비즈니스 1은 기획, 연출(프로듀싱), 제작 중 한 개 분야에 대하여 인정(복수인정 불가)

(6) 음악작곡, 평론, 논문, 저서, 번역 등에 관한 사항은 음악학과의 일반 연구업적 내용과 동일 적용함.

(7) G20에서 인정되는 국제적인 공연, 전시(공간음향디자인 포함), 상영, 출판(악보, CD, DVD 등)관련 업적물에 대해서 150% 인정함.

(연구업적 CODE표 - 미술)

구분 CODE	내 용	배 점	
미술대전 10	미술대전, 관전에서 특선 이상 수상	100점/건	
미술대전 20	미술대전, 관전에서 입선 이상 수상	50점/건	
미술기타전 10	디자인 전문지에 게재된 작품(1작품 1회에 한함)	75점/건	코어
미술기타전 20	국내・외 Fair에 출품되어 전시된 작품 (1작품 1회에 한함)	120점/건	코어
미술프로젝트 10	국제 공모전 대상(당선) 혹은 미술프로젝트 총괄 (기획 및 진행)	250점/건	코어 (SSCI, A&HCI, SCIE급 인정)
미술프로젝트 20	국제 공모전 입선 이상(수상) 혹은 미술프로젝트 공동 참여	150점/건	코어
미술프로젝트 30	국내 공모전 대상(당선) 혹은 미술프로젝트 총괄 (기획 및 진행)	150점/건	코어
미술프로젝트 40	국내 공모전 입선 이상(수상) 혹은 미술프로젝트 공동 참여	100점/건	코어
미술개인전 10	국외 인정된 장소에서의 신작품 개인전 (증빙자료 제출)	200점/건	코어
미술개인전 20	국내 광역시 이상에서의 신작품 개인전 (증빙자료 제출)	150점/건	코어
미술개인전 30	국내 기타 지역에서의 개인전	50점/건	
미술초대전 10	대전, 관전 초대작가전 출품(1작품 1회에 한함)	70점/건	코어
미술단체전 10	국외 저명단체 주최 전시회의 신작품 출품	100점/건	코어
미술단체전 20	국내 전국규모의 저명 사단법인 주최 국제전의 신작품 출품	90점/건	코어
미술단체전 30	국내 전국규모의 저명 사단법인 주최 국외전의 신작품 출품	60점/건	코어
미술단체전 40	국내 전국규모의 저명 사단법인 주최 국내전의 신작품 출품	40점/건	코어
미술단체전 50	일반 국외 전시회의 신작품 출품	30점/점	
미술단체전 60	일반 국내 전시회의 신작품 출품	20점/점	
디자인평론 10	미술평론(인터넷매체 포함, 매수 제한 없음)	20점/건	

(1) 상기 코어 업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순수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음.

(2) 미술프로젝트 10~40

* '업무 분담과 연구자 및 담당자의 성명이 기재된' 계약서, 애니메이션의 경우 Ending Credit 등을 제출하여야 함

(3) 미술개인전 10

* 초청장, 작품 발송 근거서류, 본인 실명 항공권, 전시 인정이 가능한 현지 전시 사진, 현지 전시 작품 촬영 사진 전체 등 전시회 근거 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장소는 갤러리, 대학, 관공서로 한정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일 경우 공인된 장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4) 미술개인전 20

* 작품 발송 근거서류, 본인 실명 교통 근거 서류, 전시 인정 가능한 현지 전시 사진, 현지 전시작품 촬영 사진 전체, 전시 초청장 등 전시회 근거 서류 미제출시 불인정
* 장소는 갤러리, 대학(호서대학교 제외), 관공서로 한정하며 이에 해당되지 않는 장소일 경우 공인된 장소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추가로 제출해야 함
* 광역시 이외에 천안, 아산, 분당, 일산, 파주는 인정 장소로 포함함

(5) 단체전: 순회 전시의 경우 1회에 한하여 30%를 인정함.

(6) 미술단체전 10

* 단체의 조직, 연혁, 주요활동 등을 통해 국외 저명단체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제출해야 함

(7) 미술단체전 20, 30, 40

* 국내 저명 사단 법인: 시.도 급 이상의 지자체에 사단법인 등록이 되어있으며, 학술등재지를 발간하고 있는 학회 및 협회
* 한국미술협회와 같이 학술등재지를 발간하지 않을 경우 학회 및 협회단체의 조직, 연혁, 주요활동 등을 통해 국내 저명 사단법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홈페이지 주소를 제출해야 함
* ‘국제전’은 국내・외의 장소에서 한국 포함 5개국 이상의 국가가 참여한 전시회, ‘국외전’은 해외의 장소에서 5개국 이하의 국가가 참여한 전시회, ‘국내전’은 국내의 장소에서 5개국 이하의 국가가 참여한 전시회를 의미함

(8) 애니메이션 분야: 영상물 CD를 포함한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함.

(연구업적 CODE표 - 체육)

구분 CODE	내 용		배점	비고
체육국제대회 10	올림픽경기출전(교수 또는 지도학생 입상)		450점	코어 (SSCI, A&HCI, SCIE급 인정)
체육국제대회 20	종목별 세계선수권대회출전(교수 또는 지도학생 입상)		360점	
체육국제대회 30	유니버시아드대회, PGA(LPGA) 출전 (교수 또는 지도학생 입상)		250점	
체육국제대회 40	아시아경기대회출전(교수 또는 지도학생 입상)		200점	
체육국제대회 50	종목별 아시아선수권대회출전 (교수 또는 지도학생 입상)		200점	코어 (교수 입상의 경우)
체육국내대회 10	전국체전, 종목별 전국선수권대회 (교수 또는 지도학생 입상)		70점	
체육국내대회 20	전국체전 선발, KPGA, KLPGA(세미프로 본선진출, 2부, 3부) (교수 또는 지도학생 입상)		50점	
체육국내대회 30	국가대표 선발, KPGA, KLPGA(정회원 본선진출, 1부)		100점	
체육공인자격 10	국제자격증(국제공인) 취득		200점	코어
체육공인자격 20	국내자격증(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가맹단체) 취득		90점	
체육공인자격 30	국내자격증 (체육지도자,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등) 취득		50점	
체육공인자격 40	국내자격증	KPGA, KLPGA 정회원	90점	
		KPGA, KLPGA 세미프로	70점	
체육국제임원 10	국제대회 교수임원(올림픽경기, 세계선수권대회, PGA)		150점	코어
체육국제임원 20	국제대회 교수임원(유니버시아드대회, 아시아경기대회, 종목별아시아선수권대회)		100점	
체육국내임원 10	국내대회 교수임원(전국체전)		70점	

(1) 코어 중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순수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체하는 경우 취득점수의 30%로 인정

(2) 경기출전은 감독, 코치, 심판, 위원 및 선수로서 경기대회에 참가한 경우를 말하며, 국제경기는 참가 시에 점수를 부여하고 국내경기는 참가하여 입상을 했을 경우에만 점수를 부여함.

(3) 체육관련 공인자격증은 국제적 체육단체나 기관,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가맹 경기단체가 인정하는 국제, 국내 심판과 지도자 자격증 및 운동처방사 자격증 등이다.

(4) 공인된 체육지도자 연수과정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하는 생활체육지도자, 경기지도자, 대한체육회 가맹 경기단체에서 주관하는 정규적인 연수과정이다.

(5) 체육국제임원, 체육국내임원의 경우 봉사업적과 동시인정이 불가함

(연구업적 CODE표 - 연극)

구분 CODE	내 용	배 점	비 고
연극공연10	G20국가 국제 공연 장·단막 연출	250-150점 (별도심사)	코어
연극공연20	광역시 이상 장·단막 연출	200-150점 (별도심사)	코어
연극공연30	중소도시 장·단막 연출	100-80점 (별도심사)	코어
연극공연40	G20국가 국제 공연/국제저명영화제 출품영화 (주·조연급)	250-150점 (별도심사)	코어
연극공연50	광역시이상 장·단막/국내저명영화제 출품영화 (주·조연급)	200-150점 (별도심사)	코어
연극공연60	중소도시 장·단막/국내저명영화제 출품영화 (주·조연급)	100-80점 (별도심사)	코어
연극공연70	드라마 투르그 및 기획	80점	
연극/뮤지컬(무대)10	G20국가 국제공연 무대미술 및 장치(무대기술)	250-150점 (별도심사)	코어
연극/뮤지컬(무대)10	광역시 이상 장·단막 무대미술 및 장치(무대기술) - 무대디자인, 장치, 조명, 의상, 분장, 음악, 음향효과 등 (공연 전체 단독 장치)	200-150점 (별도심사)	코어
연극/뮤지컬(무대)10	광역시 이상 장·단막 무대미술 및 장치(무대기술) - 무대디자인, 장치, 조명, 의상, 분장, 음악, 음향효과 등 (부분 장치)	100-80점 (별도심사)	코어
연극극작10	장막(극작-희곡창작) A4 50매 또는 90분 이상	150점	코어
연극극작20	단막(극작-희곡창작) 30분 이상	80점	코어
연극극작30	장막(번역)	60점	
연극극작40	단막(번역)	30점	
연극경연10	국제급(경연대회 본상 수상)	중장막 200점 단막 150점	코어 (SSCI, A&HCI, SCIE급 인정)
연극경연20	국내정상급(경연대회 본상 수상)	중장막 150점 단막 100점	
연극경연30	중소도시(경연대회 대상 수상)	80점	
연극평론10	평론 - A4 12매 이상 (인터넷매체 포함) - A4 5매~11매 (인터넷매체 포함)	20점/편 10점/편	코어 최대5편

※ 상기 코어 업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순수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음

※ 연극/뮤지컬(무대) 코어여부는 연구업적평가위원회의 별도심사를 통하여 규정함 (피심사자의 무대미술 및 장치의 전문성 고려)

※ 2년 이내의 연극/뮤지컬(무대) 재공연의 경우 재공연 1차에 한하여 50% 점수를 인정함.

※ 연극/뮤지컬(무대) 계약서상에 담당한 분야를 명시하고 장치 제작도면 및 제작 과정 등의 사진을 첨부하여야 함.

※ 동일한 작품에 대한 중복수상의 경우 일회 혹은 하나만 업적으로 인정함

※ 한 작품에서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제작, 연출, 희곡창작, 주연 등) 상위 한 개의 역할에 대한 업적 인정함

※ 상기 표에 국제저명영화제, 국내저명영화제는 영화방송분야의 해당 규정을 따른다.

*주연-공연의 프로그램 또는 영화(ott포함) 엔딩 크레딧에 소개되는 이름의 순서로 판단하며, 첫 번째와 두 번째 순서까지 주연으로 간주한다. 단, 이름 소개 순서가 두 번째 이상이라도 계약서에 따로 주연이라고 명시되어 있으면 주연으로 인정한다.

점수 - G20국가 국제 공연/유명영화제 출품 영화/ 주연 250점

광역시이상 장·단막/유명상업영화/ 주연 200점

*조연-주연 이외의 역할

점수 - G20국가 국제 공연/유명영화제 출품 영화/ 조연 150점

(연구업적 CODE표 - 예체능계열, 영상미디어 (구 영화방송)

구분 CODE	내용	배점	비고
영화제작(연출) 10	국제저명영화제	360·240/건 (장편·단편)점/건	코어
영화제작(연출) 20	국내장편개봉	270점/건	코어
영화제작(연출) 30	국내저명영화제	180·120점/건	코어
영화제작(연출) 40	국내영화제	120·90점/건	코어
영화제작(제작) 50	국제저명영화제	360·240점/건	코어
영화제작(제작) 60	국내장편개봉	270점/건	코어
영화제작(제작) 70	국내저명영화제	180·120점/건	코어
영화제작(제작) 80	국내영화제	120·90점/건	코어
영화제작(기획) 90	국제저명영화제	180·120점/건	코어(별도심사)
영화제작(기획) 100	국내장편개봉	135점/건	코어(별도심사)
영화제작(기획) 110	국내저명영화제	90·60점/건	코어(별도심사)
영화제작(기획) 120	국내영화제	60·45점/건	코어(별도심사)
영화기술 10	국제저명영화제	180·120점/건	코어(별도심사)
영화기술 20	국내장편개봉	135점/건	코어(별도심사)
영화기술 30	국내저명영화제	90·60점/건	코어(별도심사)
영화기술 40	국내영화제	60·45점/건	코어
영화대본(각본) 10	국제저명영화제	180·120점/건	코어
영화대본(각본) 20	국내장편개봉	135점/건	코어
영화대본(각본) 30	국내저명영화제	90·60점/건	
영화대본(각본) 40	국내영화제	60·45점/건	코어
영화대본(각본) 50	공모전 수상 및 초청 : 200자 원고지 100매 이상	180점/건	코어
영화대본(각본) 60	공모전 수상 및 초청 : 200자 원고지 50매 이상-100매 미만	135점/건	코어
영화대본(각본) 70	공모전 수상 및 초청 : 200자 원고지 20매 이상-50매 미만	90점/건	
영화대본(각본) 80	공모전 수상 및 초청 : 200자 원고지 10매 이상-20매 미만	45점/건	코어
영화대본(각색) 90	국제저명영화제	120·80점/건	코어
영화대본(각색) 100	국내장편개봉	90점/건	코어
영화대본(각색) 110	국내저명영화제	60·40점/건	
영화대본(각색) 120	국내영화제	40·30점/건	
영화제기획 10	국제저명영화제	180점/건	
영화제기획 20	국내저명영화제	90점/건	
영화제기획 30	국내영화제	45점/건	

※ 영화방송 분야 세부 설명

1. 국제저명영화제는 9개국 이상에서 출품하고 상영작 편수가 120편 이상인 영화제를 말하며 장소는 해외 소재여야 한다.
2. 국내장편개봉은 60분 이상의 영화를 국내의 영화관에서 개봉한 것을 말한다.
3. 국내저명영화제는 상영작 편수가 80편 이상인 영화제를 말한다.
4. 국내영화제는 상영작 편수가 10편 이상인 영화제를 말하며 장소는 상관없다.
5. 연구업적의 가산일은 해당 작품의 최초 공식 상영 또는 수상한 일자를 기준으로 한다.
6. 상기 코어 업적으로 한국연구재단 등재지 이상의 순수 학술지 게재 논문을 대체하는 경우에는 부족분에 한하여 대체할 수 있음.
7. 동일한 작품에 대한 중복 수상의 경우 1회 혹은 1개만 업적으로 인정한다. 즉 같은 이름의 영화로는 어떤 경우(수상, 개작, 재상영 등을 말함)에도 중복해서 점수를 받을 수 없다.
8. 한 작품에서 역할이 중복되는 경우, 1개의 역할에 대한 업적 점수만을 인정한다.
9. 도표의 기준 점수는 1인 단독 저자 기준이므로, 복수의 저자가 있을 시에는 그 점수를 1/n로 정한다. 즉 연출이 2명이면 1명 연출이 받을 점수의 1/2이다. 가령, 엔딩 크레딧에서 “음악감독 1명, 음악 2명”으로 표기될 경우, 음악 분야의 저자 수는 3명으로 계산한다.
10. 위 도표에 있는 모든 항목의 점수는 시간별 2단계(장편(60분 이상), 단편(60분 미만))로 계산한다.
11. 옴니버스 영화일 경우, 자신이 직접 참여한 영상의 시간만을 영화의 시간으로 인정한다.
12. 영화 작품의 발표란 영화제에서의 수상 및 초청을 의미한다.
13. 하나의 영화에서 우리 대학 교수가 복수로 이름을 올렸을 경우, 세부전공별로 1명만 인정한다.
14. 방송 분야도 위 영화의 기준에 준해 평가한다.
15. 그 외 영상 매체(웹 드라마, 전시 영상, 인터렉티브 영상 등)와 플랫폼(OTT, 인터넷, 온라인 영화제 등) 또한 위 영화의 기준에 준해 평가한다.
16. 영화방송분야의 전공특성 상 각 스테프간의 위계, 작품에 대한 기여도 등에 대한 평가는 업적평가위원회에 소명하도록 하며, 업적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심의를 거친다.
17. 국제 영화제 수상의 경우 SSCI, A&HCI, SCIE급 업적으로 인정한다.

(연구업적 CODE표 - 예체능계열, 문화기획)

구분 CODE	내용	배점	비고
공연.전시 기획 10	G20 국가 국제 공연.전시에서 문화콘텐츠 제작.기획.연출 중 하나만 선택	150-250점/건	코어
공연.전시 기획 20	국내 공연.전시에서 문화콘텐츠 제작.기획.연출 중 하나만 선택 (광역시 이상)	80-150점/건	코어
공연.전시 기획 30	국내 공연.전시에서 문화콘텐츠 제작.기획.연출 중 하나만 선택(중소도시 이하)	40-80점/건	코어
축제.이벤트 기획 10	G20 국가 국제 축제.이벤트에서 문화콘텐츠 제작.기획.연출 중 하나만 선택	150-200점/건	코어
축제.이벤트 기획 20	국내 축제.이벤트에서 문화콘텐츠 제작.기획.연출 중 하나만 선택 (광역시 이상)	80-150점/건	코어
축제.이벤트 기획 30	국내 축제.이벤트에서 문화콘텐츠 제작.기획.연출 중 하나만 선택 (중소도시 이하)	40-80점/건	코어

※ 문화기획 분야 세부 설명

1. 공연 : 대중음악공연/ 전통공연 / 클래식공연 / 다원예술공연
2. 전시 : 순수예술전시 / 응용예술전시 / 공공예술전시 / 다원예술전시
3. 축제: 향유자 수 1000명 이상
   1)공공축제: 지자체(시·군) , 지역문화재단, 기타 공공문화예술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축제
   2)민간축제: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민간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축제
4. 이벤트: 향유자 수 1000명 미만
   1)공공이벤트: 지자체(시·군) , 지역문화재단. 기타 공공문화예술기관이 주최·주관하는 이벤트
   2)민간이벤트: 주식회사, 사회적기업, 민간예술단체가 주최·주관하는 이벤트

*축제·이벤트는 업적평가 시 해당 행사의 향유 인원이 명시된 공인 결과보고서의 제출이 필요.

5. G20 국가 국제 공연 및 전시는 개최국가, 참여 국가 및 인원, 공연장 및 전시장 규모 등의 소명 증빙을 기초하여 업적평가위원회가 별도 심의 후 판단한다.
6. G20 국가 국제 축제 및 이벤트는 개최국가, 참여 국가 및 인원, 개최 기간 및 규모 등의 소명 증빙을 기초하여 업적평가위원회가 별도 심의 후 판단한다.
7. 이후 세부사항에 대해서 업적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연구업적 CODE표 - 서적의 쪽수에 따른 점수부여 표)

평가항목	내 용	기준점수 (1편당)
국제전문서적	150쪽 이상	500점
	100쪽 - 150쪽	250점
	50쪽 - 100쪽	200점
국내전문서적	150쪽 이상	300점
	100쪽 - 150쪽	150점
	50쪽 - 100쪽	100점
번역서	150쪽 이상	120점
	100쪽 - 150쪽	80점
	50쪽 - 100쪽	60점
편저서 및 교재개발	150쪽 이상	50점
	100쪽 - 150쪽	33점
	50쪽 - 100쪽	25점

표 -<평가3> (개정 2023.08.31.)

산학협력업적 종합평가표

평 가 항 목			배 점	비 고	
산학협력교육활동	(1) 산학연계/인력양성		수익금÷100,000×참여율	코어	
	(1-1) 유학생/성인학습자유치		수익금÷1,000,000×참여율		
	(2)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도		10점/기업 (단, 동일기업에서 현장실습인원 3인 초과시 3점/인 추가 부여)	코어	학기당 최대 70점
	(3) 학생창업동아리 지도		5점/건		
	(4) 학생창업 지도		기간 내 40점/건 기간 외 20점/건	코어	
	(5) 과제형 캡스톤디자인 지도		20점/건		학기당 최대 40점
산학협력연구활동	(1) 외부연구비수주 (최대 간접비 인정 50%)		종합평가표 설명 참조	코어	
	(2) 지식재산권	국제특허 등록	500점/건	코어	
		국내특허 등록	200점/건	코어	
		실용신안 등록	50점/건	코어	
		디자인 등록	30점/건, 최대 3건	코어	
		저작권 등록	30점/건, 최대 3건	코어	
		특허출원(국내/국제)	20점/건		학기당 최대 40점
	(3) 산학협력관련 사업 기획 참여 및 운영			코어	시행세칙 5조 참조
	(4) 벤처사업비 수주		사업비×0.5÷1,000,000×참여율	코어	
	(5) 기술실시/이전/사업화		수익금÷50,000×참여율	코어	
	(6) 실험실창업		100점	코어	
	(7) 벤처창업		150점	코어	
	(8) 신기술창업		150점	코어	
	(9) 학교 기업		수익금÷100,000×참여율	코어	
	(10)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50점/건		
	(11) 학교투자기업 성과창출		대학에 귀속되는 수익금÷50,000×참여율	코어	봉사업적 중복인정 불가
산학협력봉사활동	(1) 소장품(작품), 기금, 장학금 유치/출연, 기타 산학재정기여		금액÷150,000×참여율	코어	
	(2) 기자재 유치		유치금액÷1,000,000×참여율	코어	연간 최대 40점
	(3) 산업체 기술지도 및 경영자문		5점/건	코어	연간 최대 40점
	(4) 가족기업 유치 및 관리 1) 가족기업 유치 2) 가족기업 관리		유치: 5점/기업 관리: 10점/기업		항목별 연간 최대 40점
	(5) 산학협의회 운영		20점/건		연간 최대 40점
산학협력실적달성도 평가	산학협력업적평가위원회의 평가에 따름.				산학협력중심교원에 한함.

산학협력업적 종합평가표 설명

1. 공통사항

※ 산학협력영역 업적 중 교육영역, 연구영역, 봉사영역에서 인정된 점수는 중복 인정하지 않음.

2. 산학협력 교육활동

(1) 산학연계/인력양성 : 수익금÷100,000×참여율

1) 교육부에서 인정한 정원 외 계약형학과 운영, 유학생/성인학습자(신입재직자, 편입학 포함) 유치를 말함

- 계약형학과: 수익금÷100,000×참여율
- 유학생/성인학습자 유치: 수익금÷1,000,000×참여율

2) 수익금: 교육비용, 시설사용료 등의 제반 경비를 제외한 순수익금

3) 산업체와의 계약서 사본 제출(계약형학과)

4) 대학원은 제외한다(단, 일반대학원 계약형학과는 가능)

(2) 현장실습 및 인턴십지도

※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하여 현장실습지원센터에서 주관한 경우에 한하며, 동일기업의 경우 동일 학기에 1건만 인정함. 단, 학기 중과 방학은 별건으로 구별하여 인정함.

1) 참여학과의 학과장(전공주임)이 인정하는 경우 학과 소속이 아닌 교원 (타학과 또는 사업단 소속)도 현장실습 및 인턴십 지도를 할 수 있음

2) 1)항의 경우 참여학과의 학과장의 승인서 제출

(3) 창업동아리 지도

※ 교육혁신처 창업교육센터에 등록 된 창업동아리를 지도한 경우

※ 교육업적의 동아리지도와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4) 학생창업 지도

※ 기간 내 창업의 경우 40점/건을 부여하고 기간 외 창업의 경우 20점/건을 부여

※ 기간 내라 함은 재학생 또는 8월 졸업생이 명년(다음 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와 2월 졸업생이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창업한 경우를 의미한다.

1) (3)창업동아리를 통해 지도한 학생이 창업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사업자등록증과 지도증빙을 제출.

2) 지도교수/기술고문으로의 역할에 대한 증빙 제출

3) 학과 소속이 아닌 교원(타 학과 또는 사업단 소속교수)이 학생창업 동아리를 지도하였을 경우 성과로 발생하는 학생창업은 실적으로 인정함

4) 대학원생 창업지도도 동일한 방법 및 제한조건 적용됨.

(5) 과제형 캡스톤디자인 지도

※ 국책사업 등에서 인정하는 과제형 캡스톤디자인의 지도 교수(AI Design Lab, Smart Design Lab 등) 단, 교육업적과 중복인정 불가

3. 산학협력 연구활동

(1) 외부연구비 수주

- 산학협력단 규정 상의 간접비 계상비율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외부연구비 수주 업적 최대 간접비 인정비율은 50%이며, 연구과제의 구성이 부적절하거나 허위로 판명되는 경우에는 업적으로 불인정할 수 있다.

점수/건	보정값	
	학술분야1	학술분야2,3
$\frac{A \times \text{간접비} + B \times (\text{해당 연구비} - \text{간접비})}{\text{10만원}}$	A=2.0 B=0.1	A=2.0 B=0.2

- 공동연구의 경우 연구책임자와 공동연구자의 합의에 의해 업적 배분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으며, 참여율에 비례하여 업적점수를 부여한다.
- 연구보조원(학생) 및 연구원은 공동연구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 업적점수 부여 기준일은 간접비 집행일로 한다.
- 간접비 전액 집행 후 추가 입금된 연구비의 업적점수 부여 기준일은 해당 연구비 입금일로 한다.
- 연구비가 입금되어도 간접비를 집행하지 않으면 간접비가 집행될 때까지 점수 승인을 보류한다.
- 업적점수는 계약서 상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에게 부여한다.
- 관련 양식은 [양식1], [양식2], [양식3]을 참고한다.

(2) 지식재산권

- 국제특허 등록, 국내 특허등록, 실용신안등록은 최초 출원인(또는 저작자)와 최종 소유권자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인 경우만 인정한다.
- 디자인등록과 저작권등록은 최종 소유권자가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인 경우만 인정한다.
- 동일 내용의 지식재산권으로 여러 국가에 등록한 경우, 점수가 높은 한 개 만을 선택하여 점수를 부여한다.
- 기존에 국내 특허를 등록하여 점수를 부여받은 후 동일 내용으로 국제 특허가 등록된 경우, 국내특허와 국제 특허와의 차이 만큼의 점수를 부여한다.
- 기존에 국제특허를 등록하여 점수를 부여받은 후 동일 내용으로 국내 특허가 등록된 경우에는 점수를 부여하지 않는다.
- 연구자 점수 = 기준점수×본교지분율×발명자 지분율

- 본교 산학협력단과 타 기관이 지식재산권을 공동으로 소유한 경우, 기준점수 중 본교 지분율 만큼만 인정한다.
- 발명자 중 본교 재학생(출원 시점)이 있는 경우, 재학생 지분율은 발명자 중 본교 전임교원에게 배분한다.
- 외부기관과 공동 소유 지식재산권에 대해서는 발명자 지분율 산정시, 본교 소속 구성원에 한정한다.
- 특허출원은 최초 출원인이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인 경우에 인정한다. 제출 건당 최대 20점을 부여하되 연구자 점수는 기준점수x본교지분율x발명자 지분율로 한다.

(3) 산학협력관련 사업기획 참여 및 운영

※ 본 업적의 대상이 되는 사업은 국책사업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사업에 한 함

※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5조의 기준에 의해 업적점수를 부여함

※ 산학협력관련 사업운영 업적은 연구업적의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업적, 봉사업적의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업적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 국책사업관리위원회에서 인정한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점수는 외부연구비수주(간접비) 업적으로 인정함

※ 사업규모는 대학의 대응자금 및 현물제외

※ 사업계획서(협약용)사본 제출

※ 정부기관 등의 정책차원에서 대학에 배정형식을 취하여 진행되는 사업의 운영은 불인정 (예 : 중소벤처기업부의 산학연 컨소시엄 사업)

(4) 벤처사업비 수주

1) 사업 책임자에 한함

2) 사업비 규모는 연간 기준임(다년도 사업일 경우 매년 반영)

(5) 기술실시/이전/사업화

1) 기술료 순수익금이라 함은 기술료 수입에서 발명자 보상금, 해당 기술개발에 대학 차원에서 투입된 연구비 및 기술의 특허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된 경비를 제외한 금액임

2) 계약서 사본 및 기술료 순수익금 확인서 [양식4] 제출

3) 저작권, 디자인권 등을 활용한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 차원의 수익발생도 동일하게 평가함

4)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에 성공에 따른 경상 기술료 입금 시 인정

5) 계약서 사본 및 입금확인서 [양식5] 제출

(6) 실험실 창업

1) 대표이사에 한하여 인정

2)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해당기업의 주식보유 시 인정

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제출(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주주명부 제출, 대표이사에

한하여 인정이기 때문)

4) 1회에 한하여 한정

(7) 벤처 창업

1) 대표이사에 한하여 인정

2)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해당기업의 주식보유 시 인정

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제출

4) 1회에 한하여 한정

5) 벤처기업 인증 시 인정

6) 법인 등기부 등본/주주명부/벤처기업인증서 제출(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주주명부 제출, 대표이사에 한하여 인정이기 때문)

(8) 신기술 창업

1) 대표이사에 한하여 인정

2)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해당기업의 주식보유 시 인정

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제출

4) 1회에 한하여 한정

5) 신기술 창업전문회사 인증 시 인정

6) 법인 등기부 등본/주주명부/신기술창업전문회사 인증서 제출(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주주명부 제출, 대표이사에 한하여 인정이기 때문)

(9) 학교 기업

1) 순 수익금이란 총수입에서 총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말함

(10) 기업부설연구소 유치:

1) 국책사업으로 유치되어 외부연구비 수주 실적이 이미 인정된 업적으로서의 기업 부설 연구소 유치는 인정하지 않음.

(11) 학교투자기업 성과창출

1) 대표이사에 한하여 인정

2)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해당기업의 주식보유 시 인정

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제출(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주주명부 제출, 대표이사에 한하여 인정이기 때문)

4)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는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기의 업적으로 인정

5) 봉사업적중 학교투자기업 성과창출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4. 산학협력 봉사활동

(1) 소장품(작품), 기금(유가증권 등), 장학금 유치/출연, 기타 산학재정기여

1) 대학, 산학협력단 입금 실적만 인정
2) 소장품, 유가증권의 경우 시세평가 금액 인정
3) 산학연계재정기여확인서 [양식6] 제출
4) 학기별 입금액 기준(기타 산학재정기여는 소요경비를 제외한 실수익 기준)
5) 지정장학금 불인정

(2) 기자재 유치
1) 감정평가 또는 시세확인 금액 인정 (감가상각 10년)
2) 산학연계재정기여확인서 [양식6] 제출
* 전문기관 발행 감정평가서 또는 시세확인서 제출

(3) 산업체 기술, 경영지도
1) 기술지도를 통한 성과발생 시 인정
(회사명 명기 논문 또는 산학협력영역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성과)
2) 기술지도보고서 [양식7] 제출
3) 전담관리 중인 가족기업의 기술지도 제외

(4) 가족기업 유치
1) 가족기업 유치
- 산학협력단 가족기업 협약서 및 가족기업유치확인서 [양식8] 제출
2) 가족기업 관리
- 가족기업 협약서 상의 전담교수에 한하며, 가족기업전담관리보고서 [양식 9]를 제출하고 산학협력영역 평가항목에 해당하는 성과가 도출된 경우에만 점수 부여

(5) 산학협의회 운영 (20점/건, 최대 40점)
1) 연간 4회 이상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회원 기업(학, 관 포함)이 10개 이상인 경우 인정
2) 운영책임자 51%인정, 나머지 49%는 책임연구원이 배분함 (100% 기준)
3) 협의회 회원 명단 및 협의회 개최 실적 증빙서 제출

5. 산학협력실적 달성도 평가
※ 평가기간에 맞추어 산학협력업적평가위원회에서 달성도 평가를 실시한다.

표 -<평가4> (개정 2023.08.31., 2024.08.31.)

봉사업적 종합평가표

영 역	평 가 항 목			점수/학기당			비고
봉 사 (학기단위 누적)	1.교내	(1) 교내 공식행사 참석		최대 70점/년			
		(2) 교내 행정기여도	1) 보직	최대 350점			
			2) 위원회 활동	최대 100점			
		(3) 입시 및 홍보지원	1) 중·고교 및 전문대 특강/입시 설명회/입시박람회	15점/회		최대 90점	
			2) 중·고교 및 전문대 방문(학원홍보)	5점/학교			
			3) 입시관련 워크샵 참석	10점/ 회		최대 50점	
			4) 입시 문항 출제	15점/ 회			
			5) 입시 면접 및 실기 참여	10점/ 일			
			6) 우수학생 유치 (최종 등록 후 인정)	5-100점/ 명			
		(4) 취업 지원	1) 취업특강 등	10점/ 회		최대 50점	
			2) 취업관련 워크숍 참가	10점/ 회			
			3) 기타 교육혁신처 인정 행정 지원	10점/ 회			
		(5) 단과대학(부서) 및 대학발전 참여 실적		50점/학기(±100%)			
	2.교외	(1) 저명학술단체의 간부			최대20점	최대 100점	
		(2) 정부기관(산하기관), 공공단체의 위원		10점/건	최대50점		
		(3) 사회봉사		5점/건	최대10점		
		(4) 기타활동			최대30점		
	3.대학 발전기여	(1)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참여		시행세칙 5조 참조			
		(2) 학교투자기업 성과창출		대학에 귀속되는 수익금÷50,000×참여율			
		(3) 대학 브랜드제고 활동참여		대학브랜드위원회 평가점수			
		(4) 대학 특별프로젝트 참여		국책사업위원회 평가점수			
	4.기타	S형(봉사중심)으로 평가받는 교원		학교발전기여도 평가 (최대 100점/년)			

봉사업적 종합평가표 설명

1. 교내봉사

(1) 교내행사참여

- 전체교수연수(년) 1회: 10점/회
- 전체교수회의_년 2회: 4점/회, 최대 8점
- 채플(년) 8회: 4점/회, 최대 32점
- 입학식: 5점/회
- 학위수여식(동계, 하계): 5점/회, 최대 10점
- 단과대 행사(단과대 지정): 4점/회, 최대 8점

(2) 교내행정기여도

1) 보 직

보직 구분	보 직 명	최대 점수
가군	부총장, 일반대학원장, 학장, 본부 처/실장, 산학협력단장	350점
나군	대형국책사업단장, 부처장, 벤처대학원장, 연합신학전문대학원장, 기술경영전문대학원장, 생활관장, 융합교육원장	300점
다군	부학장, 창업지원단장, 산학협력부단장, 호서유치원장, 중앙도서관장, 교육성과관리센터장, 아트스페이스 HOSEO 관장, 평생교육원장, 특수대학원장, 교육환경개선사업단장, 공학교육혁신센터장, 호서브랜드디자인센터장, 호서브랜드미디어센터장, 산학융합캠퍼스장, 산학감사실장, 일반대학원 부원장, 벤처프런티어교육원장, 한국어교육원장	250점
라군	대형국책사업단부단장, A급 국책사업단장, 연구실안전관리센터장, 스쿨장/학과장/학부장/전공운영위원, 입학사정관 실장, 산학협력단 센터장급, 교내특성화사업단장, 창업지원단 센터장급, 보건진료센터장, Caritas상담센터장, Caritas봉사센터장, 현장실습지원센터장, 창업교육센터장, 생명윤리위원장, 대학원 주임교수(학생수 50명 이상), 원격교육지원센터장, 성인학습지원센터장, LMS지원센터장, 충남산학융합원장, 장애학생지원센터장, 학생IR센터장, 인권센터장, 교양교육센터장, 학습역량지원센터장, 벤처교육원장, 융합교육원 부원장	160점
마군	대형국책사업단센터장, A급국책사업단 부단장(본부장, 센터장 포함), B급국책사업단장, 대학언론사 주간, 대학 출판부장, 입학사정관, 취업주관교수, 입시홍보주관교수, 교양대표교수, 교직부장, 생활관 부관장, 대학원 주임교수(학생수 20명 이상 ~ 50명 미만), 충남산학융합원센터장급, 벤처대학원부설 평생교육원장, 동물실험윤리위원장, 벤처교육원 센터장급	100점
바군	B급 국책사업단 부단장(센터장 포함), C급국책사업단장, 대학원 주임교수 (20명 미만), 부설연구소(센터)장, 교육연수원장, 교직담당주임, 국책사업 실무책임교수, 생명윤리위원회 (전문)위원, 충남산학융합원참여교수, 인증프로그램 책임교수, 동물실험윤리위원	50점

* 상기에 기술되지 않은 센터의 부센터장은 해당 센터의 센터장의 차하위등급에 해당하는 보직점수를 부여한다.
- 상급자가 개별 평가 점수 부여
- 보직 반영 점수는 실제 재직월수 비율로 인정함
- 대형국책사업, A급 국책사업, B급 국책사업 및 C급 국책사업은 연간 사업비가 각각 30억 이상, 10억 이상에서 30억 미만, 5억 이상 10억 미만, 5억 미만의 국책사업을 의미함
- 상기 보직 외에 누락 또는 신설 등의 사유로 인해 추가되는 보직은 총장 결정에 의해 보직 점수를 인정받을 수 있음.
- 부설연구소는 보직 임명이 있는 기본연구소, 국가지정연구소, 대학지정연구소에 한함.

※ 조직 변경에 따른 보직 변경 시 교무처장이 교내행정기여도를 감안하여 보직 구분을 결정함.

2) 위원회 활동
- 학기당 2회 이상의 회의 개최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적으로 인정함.
- 위촉기간 중 개최된 위원회에 최소 1/2 이상 참석한 경우에만 인정함.
- 대학본부, 단과대학, 산학협력단, 대형, A, B급 국책사업단, 대학부속기관 등 주관부서에 등록된 위원회에 한함.

위원회 개최 횟수	점 수		비 고
	대학본부	대학본부 외	
2~5회/학기	15점	8점	
6회 이상/학기	30점	15점	

(3) 입시 및 홍보지원

1) 중·고교 및 전문대 특강/입시설명회/입시박람회 : 15점/회

2) 중·고교 및 전문대 방문(학원홍보) : 5점/학교
- 학원홍보는 예체능대학 및 항공서비스학과에 한하여 인정한다.

3) 입시관련 워크숍 참석 : 10점/회

4) 입시 문항 출제 : 15점/회

5) 입시 면접 및 실기 참여 : 10점/일
- 대학원의 경우 대학원교학팀에서 실시하는 면접일과 면접교원을 지정한 경우에한하여 인정함.

6) 우수학생 유치 (최종 등록 후 인정)
- 학생부 1등급 또는 수능 2등급 이내 : 10점/명 (합격자발표 전 신청)
- 학생부 2등급 또는 수능 3등급 이내 : 5점/명 (합격자발표 전 신청)
- 최초등록 시 미달인원에 대한 추가합격학생 유치: 100점/명
- 편입생 유치 : 10점/명 (원서접수 마감 전 신청)

※ 등급 산출은 본교 반영 기준에 준함

※ 업적평가 시 입시 및 홍보지원내용을 업적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함.

(4) 취업 지원

1) 취업특강

- 본부 또는 단과대학 주관의 학생 대상의 교내 취업특강, 취업캠프 특강

2) 취업관련 워크샵 참가

3) 기타 교육혁신처 인정 취업지원관련 행정지원

(5) 단과대학(부서) 및 대학발전 참여 실적

- 단과대학 점수의 총합은 평가 시점 소속 교원을 기준으로 하며, 개별 교원의 학과(부서) 및 대학발전 참여실적 점수는 학장, 학부(과)장이 각각 부여하며, 반영 비율은 교무처에서 정한다.

※ 단과대학 총점: 50점 × 1배속(원) 단과대학 소속 교원수

※ 소속 교원의 참여실적 점수는 50점(기준점수)±100% 이내에서 결정

- 학과소속이 아닌 교원 : 피평가자의 소속, 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교무처에서 평가위원 2인을 선정하여 평가함
- 교무위원급(보직 가군) : 총장이 평가함
- 업적점수는 원점수를 환산하여 반영한다.

<단과대학(부서) 및 대학발전 참여실적 배점표>

번호	평 가 내 용	점수
1	(근태) 피평가자는 교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며, 정당한 사유의 출장을 제외한 근무시간에는 항상 교내에 상주하며 학생지도 및 연구, 봉사에 임한다.	
2	(학생지도) 피평가자는 교육자로서 품위를 유지하며, 주기적인 면담 및 학과행사 참여 등을 통하여 학생의 인성, 진로, 취업 등을 지도한다.	
3	(학과발전기여) 피평가자는 학과 구성원들과 상호협력하에 학과 발전을 위해 노력한다.	
4	(학교발전기여) 피평가자는 (단과)대학의 정책적 목표 수행 및 발전을 위하여 노력한다.	
5	(교육혁신 또는 사업성과기여) -피평가자는 혁신교수법 도입, 유연학사제 참여 등 대학의 교육혁신을 위해 노력한다. -피평가자는 대학 및 학과의 사업(국책, 교책, 인증, 기타 재정지원사업 등) 추진 및 운영에 기여한다.	
합 계		100

※ 단과대학(부서) 및 대학발전 참여실적 평가 문항은 대학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2. 교외봉사

(1) 저명학술단체의 간부

※ 국제저명학술지/한국연구재단 등재지 및 등재후보지 발간 학회

※ 3개월 이상/직위 증빙 필요, 동일 및 산하기관(지회 포함)에서 겸직 시 하나만 인정

1) 회장 : 20점,

2) 임원(부회장, 이사, 감사, 간사) : 10점,

3) 논문지 및 학회지의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 10점

(2) 정부기관(산하기관), 공공단체의 위원

-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중요한 정책결정을 위한 정책, 기술자문위원 등(교육봉사업적 평가위원회 승인)
- 학교 및 학술단체의 경우는 제외.
- 위촉장이나 위촉공문 등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3개월 이상/직위 증빙 필요
- 동일 및 산하기관(지회 포함)에서 겸직 시 최대 3개까지 인정함

(3) 사회봉사

- 무보수로 복지기관 등에서 봉사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기관의 봉사일자별 봉사내역을 포함한 확인서를 카리타스봉사센터에 증빙으로 제출
- 교회봉사의 경우 외부 선교 및 사회봉사 활동만 인정

(4) 기타 활동 (최대 30점/학기)

1) 학술상 수상

- 국제저명학회 학술상 수상: 20점/건
- 국내저명학회 학술상 수상: 10점/건
- 기관 및 단체학술 수상 : 5점/건

※ 공인된 학회 및 학술단체가 학술적 업적을 인정하여 수여한 상을 의미

2) 국가 포상 및 훈장

- 국가 근정포장 및 훈장: 30점/건
- 장관급 이상 표창 : 20점/건

3) 경연대회심사 및 심판

- 국제(G20) 규모 : 10점/회
- 중앙정부, 광역시도, 전국 규모: 5점/회

4) 총장 표창(공로상 등): 10점/건

3. 대학발전기여

(1)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 교원업적평가규정 시행세칙 5조의 기준에 의해 업적점수를 부여함

※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업적은 연구업적의 대학평가 및 국책사업 참여 업적, 산학협력 업적중 산학협력 관련 사업기획 참여 및 사업운영 업적과 중복 인정하지 않음

(2) 학교투자기업 성과창출

1) 대표이사에 한하여 인정

2)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이 해당기업의 주식보유 시 인정
3)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주주명부 제출(법인 등기부 등본 또는 주주명부 제출, 대표이사에 한하여 인정이기 때문)
4)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으로 귀속되는 수익금이 발생한 경우, 해당 학기의 업적으로 인정
5) 산학협력업적중 학교투자기업 성과창출과 중복하여 인정하지 않음

(3) 대학 브랜드제고 활동참여
- 대학 브랜드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 반영

(4) 대학 특별프로젝트 참여
- 국책사업위원회에서 평가한 점수를 반영

4. 기타(학교발전기여도 평가)
- S형으로 평가받는 교원은 학교발전기여도 평가를 받아야 함
- S형으로 평가받는 교원은 '학교발전기여 계획서' [양식10]를 연단위 또는 임용 계약기간 및 연봉 계약기간 주기로 작성함. '학교발전기여 계획서'는 교무처에 제출하여 목표에 대한 합의를 하고, 평가기간에 맞추어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양식1] 사업 기획/유치 예정 신고서

사업 기획/유치 예정 신고서
□사 업 명 : □사업 규모: □사업 기간: □사업발주기관:
□주요 사업 내용:
□유치 팀의 인적 구성과 참여율 현황 ○유치책임자: ○팀원(참여율):
상기 내용으로 사업 기획・유치예정 신고를 합니다. 20 년 월 일 유치책임자(기획책임자) : 인 산학협력단장 貴下

[양식2]

외부수탁연구과제 공동연구 참여확인서

□ 과제번호	
□ 과제명	
□ 총사업기간	20 . . - 20 . .(년)
□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20 . .(차년도)
□ 연구비(천원, 당해년도)	
□ 연구사업발주기관	

□ 비고 (과제 개요 등 특이사항)

□ 과제수행 인력 및 참여율 현황(참여율 합계는 100%이어야 함)

	성명	학과/부서	참여율
과제책임자			
공동연구원			
계			100%

상기 내용으로 연구사업의 공동연구원 참여율 등의 참여현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산학협력단장 貴下

※ 사업 참여자의 최소 참여율은 1/(1.5×참여자수)로 함

[양식3]

산학협력사업/외부수탁연구과제 공동연구 참여율 변경신고서

□ 과제번호	
□ 과제명	
□ 총사업기간	20 . . - 20 . .(년)
□ 당해연도 사업기간	20 . . - 20 . .(차년도)
□ 연구비(천원, 당해년도)	
□ 연구사업 발주기관	

□ 비고 (과제 개요 등 특이사항)

□ 과제수행 인력 및 참여율 현황(참여율 합계는 100%이어야 함)

변경 전			
	성명	학과/부서	참여율
과제책임자			
공동연구원			
계			100%

변경 후			
	성명	학과/부서	참여율
과제책임자			
공동연구원			
계			100%

상기 내용으로 연구사업의 공동연구원 참여율 등의 참여현황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과제책임자 : 인

산학협력단장 貴下

※ 사업 참여자의 최소 참여율은 1/(1.5×참여자수)로 함

[양식4]

기술료 순수익금 확인서
1.기술이전/실시의 개요: □이전 기술명: □기술이전/실시 기관명: □기술이전/실시 총금액: □평가대상 발명자 명: □발명자 지분:
2.기술료 순수익금 * 당해년도 기술료 입금액(부가세제외) - (발명자 보상금 + 해당 기술개발에 대학 또는 산학협력단에서 투입된 연구비 + 해당기술의 특허권 출원, 등록, 유지 등에 소요된 경비) = 000 원 × 평가대상 발명자 지분 00% = 최종 0000 원
상기와 같이 당해연도 기술료 순수익금이 발생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술이전센터장 : 인 산학협력단장 貴下

[양식5]

경상 기술료 입금 확인서
1.기술이전/실시의 개요: □이전 기술명: □기술이전/실시 기관명: □기술이전/실시 총금액: □평가대상 발명자 명: □발명자 지분:
2.경상기술료 * 당해년도 경상 기술료 입금액(부가세제외) × 평가대상 발명자 지분 00% = 원
상기와 같이 당해연도 경상 기술료가 입금되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기술이전센터장 : 인 산학협력단장 貴下

[양식6]

산학연계재정 기여확인서
1.재정 기여 부분 □발전기금 유치 □기부장학금유치 □기자재 유치 □직접 출연 □기타 재정기여
2.재정 기여자 □성 명: □소 속: □재정 기여 금액(소요경비 제외한 실 수익):
상기 내용으로 산학연계 재정기여의 공로가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산학협력단 부단장 또는 기획처장> : 인 산학협력단장 貴下

[양식7]

기 술(경영) 지 도 보 고 서

사업장 명 칭		대표자	000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담당자 확인	000 (인) (연락처:)
지도일자	년 월 일		

지 도 방 법 및 내 용

※구체적으로 작성 할 것

기술지도의 성과	내용: ※ 세부자료 별첨(증빙자료)

기업기술(경영) 지도결과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보 고 자 : 인

산학협력단장 貴下

[양식8]

가 족 기 업 유 치 확 인 서

유치기업명		대표자	
사업장 소재지		업종/주생산품	
유치자 성명		소속 및 직급	
유 치 일 자	년 월 일		

상기의 내용으로 호서대학교 가족기업을 유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산학협력센터장 : 인

산학협력단장 貴下

[양식9]

가족기업 전담관리 보고서

20 . . .

가 족 기 업 : O O O O

전 담 교 수 :

호서대학교 산학협력단

1. 가족기업의 개요

<table>
<tr><td>기 업 명</td><td colspan="6"></td></tr>
<tr><td rowspan="4">기업 현황</td><td>사업장
주소</td><td colspan="3"></td><td>대표
전화</td><td></td></tr>
<tr><td>설립년도</td><td></td><td>업
종</td><td></td><td>주
생
산
품</td><td></td></tr>
<tr><td>자 본 금</td><td>천원</td><td>매
출
액</td><td>억원</td><td>상시
종업
원수</td><td>명</td></tr>
<tr><td>Homepage 주소</td><td colspan="5"></td></tr>
<tr><td rowspan="3">산학담당자
(기업소속)</td><td colspan="2">소속 및 부서명</td><td colspan="2"></td><td>직
위</td><td></td></tr>
<tr><td>성 명</td><td></td><td>전화
번호</td><td></td><td>휴대
폰</td><td></td></tr>
<tr><td>E-mail</td><td colspan="5"></td></tr>
<tr><td>영위하고
있는
사업의 개요</td><td colspan="6"></td></tr>
</table>

2. 가족기업 전담관리 및 지도 실적

가족기업 전담관리 내용	비 고
○ 기업 지원 (장비,기술,인력 지원 등)	
○ ……	
○ …..	
○ …..	
○ …..	
○ ….	
○ ….	

3. 기업방문 및 Meeting일지

기업 방문 및 Meeting 내용		
방문 및 Meeting일자	면담자	참석자
20 . . .		
○내용		
방문 및 Meeting일자	면담자	참석자
20 . . .		
○내용		
방문 및 Meeting일자	면담자	참석자
20 . . .		
○내용		

4. 가족기업의 산학협력 만족도

가족기업		전담교수	

항 목	만 족 도				
	A(25점)	B(20점)	C(15점)	D(10점)	E(5점)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	매우미흡
호서대학교의 가족기업으로써 산학협력 수혜 정도					
전담교수의 산학협력을 위한 성실도					
가족기업으로써 호서대학교와의 산학협력 전반에 걸친 만족도					
기타 정부지원 사업에 대한 대학차원의 지원에 대한 만족도					
합 계	**100점 만점 중 _____점**				

종합의견 및 건의사항

20 년 월 일

가족기업명: 산학협력 담당자 : 인

대 표 이 사 : 직인

산학협력단장 貴下

[양식10]

학교발전기여 계획서

인 적 사 항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자택전화		휴 대 폰	
수 행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년 월)			

위 본인은 교원으로서 대학 발전을 위하여 년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 및 목표를 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학교발전기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교수명: (서명)

소속부서장(학과장, 센터장, 사업단장) (서명)

교무처장 (서명)

1) 필요성 및 목표

2) 주요 내용

3) 추진 전략 및 방법

4) 목표(정량)

(단위: 천원/ 명)

성과목표			연도				
구분	항목	가중치 (%)	20	20	20	20	20
대학 발전 기여							
	계						
자율 항목	학생 취업(예시)						
	자율 항목1						
	자율 항목2						
	계						
합계							

(대학발전기여 예) 구체적인 학교홍보, 대학발전 기여 방안 등

(자율항목 예) 학생취업, 전문가 제자 육성 등

5) 기타 사항

[양식11]

산 학 협 력 계 획 서

인 적 사 항	소 속			
	성 명		생 년 월 일	
	주 소			
	자택전화		휴 대 폰	
수 행 기 간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년 월)			

위 본인은 교외 연구비 수주, 대학 발전기금 유치, 기술 이전, 학생 취업 등의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발전을 위하여 년도별로 계획을 수립하여, 성실한 업무 수행 및 목표를 달성하고자 아래와 같이 산학협력계획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교수명: (서명)

소속부서장(학과장, 센터장, 사업단장) (서명)

산학협력단장, 단과대학장 (서명)

1) 필요성 및 목표

2) 주요 내용

3) 추진 전략 및 방법

4) 목표(정량)

(단위: 천원/ 명)

성과목표			연도				
구분	항목	가중치 (%)	20	20	20	20	20
대학 재정 기여	교외연구 수주						
	국책사업 유치						
	발전기금 및 장학금 유치						
	기술이전 및 사업화						
	계						
기타	학생 취업(예시)						
	자율 항목1						
	자율 항목2						
	계						
합계							

(자율항목 예) 벤처기업 운영을 통한 재정 기여, 지적재산권 획득, 기자재 유치, 학교 홍보 등

5) 기타 사항

[양식12]

학생지도(수상,연구프로젝트,논문발표 등)

학과(전공)		일 시	
소 속		성 명	(인)

■ 활동내용

업 적 명	
장 소	
세부내용	
관련증빙	※ 사진포함

※ 사진 회 관련증빙은 파일첨부로 포함하여 업로드 하시기 바랍니다.